

綜合有線放送法案에 관한 小考

金 楊 顯

(韓國電氣通信公社 情報通信事業本部)

■ 차

레 ■

1] 개 요	다. 종합유선방송국 허가
2] 국내외 유선방송 제도	라. 프로그램공급업 허가
가. 국내 관련법령	마. 전송방송 전송망사업 지정
나. 외국의 유선방송제도	바. 종합유선방송의 운영
3] 종합유선방송 법안	사.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구성, 운영
가. 종합유선방송의 정의	아. 피해에 대한 구제
나. 사업의 겸영제한	4] 결 론

1] 개 요

우리나라 유선방송의 역사는 1960년대초 정부가 수립,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민국 민 홍보매체의 증설과 난청·난시청지역 해소의 필요성에 따라 농어촌에 유선 라디오방송망을 확장하면서 급속히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유선라디오 방송은 방송망의 확장과 라디오보급의 확대로 점차 사양길로 접어들고 1960년대 말부터는 TV 수상기의 보급확대에 따라 유선TV 방송이 등장하게 되고 당시에는 주로 서울, 부산등 대도시인 근 지역을 중심으로 보급되어 전국에 약 1만여 가입자에 불과했으나, 작년 6월말로 조사된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약 926개 사업자에 총 160여만 가입자가 등록되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기존의 유선방송은 주로 난 시청지역을 대상으로 무선방송국의 방송내용을 동시 재전송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무선방송국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유선방송으로는 급변하는 기술발전과 다양한 시청욕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급할수 있는 새로운 매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89년 방송제도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방송매체의 발전방향을 검토하는 동시에 종합유선방송(CATV), 직접위성방송(DBS)등 뉴미디어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 이듬해에는 방송제도 연구위원회의 연구보고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의 도입을 위하여 사전에 기술성과 경제성을 검토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조사할 목적으로 종합유선방송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결정하였다. 한국통신은 '90. 6월 정부로부터 시범방송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 목동과 상계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영화, 스포츠, 교양채널 등 자주방송 3개 TV채널을 포함한 7개 TV채널과 FM 중계 3개채널 그리고 방방, 방재 등 정보통신 3개채널을 구성하여 91. 7. 1일부터 시범방송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유선방송을 관리하는 유선방송관리법의 제 규정으로는 종합유선방송을 수용하기 미흡한 실정이어서 종합유선방송을 규정할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요청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작년말과 금년초의 2회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

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유선방송 법안을 작성하였으며, 금년 8월1일에 입법 예고 한후 10월초에 정부안을 최종확정하여 현재 정기 국회에 상정한바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부에서 최종 확정된 종합 유선방송법안을 토대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며, 그에 앞서 현행 유선방송관리법의 운용 제도와 외국의 유선방송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 함으로써 법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국내외 유선방송 제도

가. 국내 관련법령

유선방송과 관계되는 법령으로는 유선방송관리 법과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그리고 전기통신공사업법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유선 방송관리법은 직접적으로 유선방송을 규정하고 있다. 유선방송에 관한 최초의 제정법률로는 1961년에 제정된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이 있었으나 1986년에 유선 TV방송을 포함하는 등 법률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하여 유선방송관리법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유선방송관리법에서는 유선방송을 중계유선, 음악유선 및 자가유선으로 구분하고 있고 유선방송사업의 허가는 공보처장관이 하며, 사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내로 하고 있다. 유선방송의 전송선로설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한국통신의 통신설비를 이용하게 하여 투자의 중복을 방지토록 하였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유선방송 사업구역을 시·군·구 관할구역 단위로 정하여 1개 사업구역에 1개 사업자를 허가토록 하고 중계유선방송의 녹음, 녹화 중계종신은 1일 1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나. 외국의 유선방송 제도

미국에서는 CATV 사업의 원칙, 기준 등은 FCC가 관장하고 실제 사업허가권 즉 프랜차이즈는 지방정부인 시·군에서 부여하는 2중구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유효기간은

법으로 규정되지는 않고 있으나 15년을 규범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요금은 유선방송운 영수입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CATV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정성(PTT)에서 유선 TV망의 건설, 유지보수자금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일부재원을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제3섹터에서 이용자인 지방상업운용회사에 대하여 프랜차이즈를 부여하고 있다. 즉 네트워크의 설치, 소유, 운영은 PTT에서 담당하고 유선방송국의 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각 지방상업 운용회사에 프랜차이즈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케이블의 설치 및 소유는 우정성 (DBP)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기준이나 방송권, 방송국운영허가는 주정부에서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방송에 관련된 사항은 영국 내무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케이블 운용사업자에 관한 프랜차이즈는 케이블 위원회가 부여 하고,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전기 통신법에 근거하여 OFTEL에서 부여하고 있다.

일본의 유선방송사업은 영리를 위한 민간사업자와 공공성을 위한 공익, 공공단체등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으며, 방송시설이나 케이블의 설치는 단일사업자나 단체에서 행하고 있다. 사업의 허가 및 신고는 우정성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인입단자수가 500 이하인 경우에는 유선전기통신 법을 적용, 신고만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으며 500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얻어야 하며 유선 TV방송법과 유선 전기통신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상으로 국내외 유선방송관리법령과 외국의 유선방송제도를 사업의 관장기관과 운용방식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해 보면 외국의 경우에는 사업의 관장기관을 2중구조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운용형태에 있어서도 크게 구미형과 일본 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미형 국가에서는 CATV 시설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정부기관에서 관장 또는 통제하나 방송국의 허가, 운용등을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독립기관에서 부여,

규제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사업의 허가를 정부기관인 우정성에서 관장하고 시설의 설치등은 민간부분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양자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3] 종합유선방송 법안

본 법안은 본문 56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종합유선방송국, 프로그램공급업, 전송망사업의 3개 사업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별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기존의 유선방송제도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국의 소유, 경영제한을 강화한 것도 특색이라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법안의 구성순서에 따라 사업의 경영제한, 각사업별 허가절차 및 사업범위, 종합유선방송의 운영에 관한 사항,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송보도에 따른 피해의 구제에 관한 사항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종합유선방송의 정의

개정 전의 유선방송관리법에서는 유선방송은 “유선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 음향 또는 영상(문자, 정지화상을 포함한다)을 공중에 전파하기 위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본 법안에서는 종합유선방송을 “영상(문자, 정지화상을 포함한다), 음성, 음향등을 유선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다채널방송”으로 정의하고 있어 종합유선방송이 다채널 방송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CATV에 관한 연방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에 의하면 유선방송(Cabletelevision System)이란 “일정한 지역사회 내의 다수의 가입자에게 비디오 프로그램을 포함한 유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폐쇄된 전송로와 여러가지 신호의 증폭, 수신 및 통제 장비세트에 구성된 설비”로 정의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기통신기본법에서는 전기통신을 “유선, 무선, 광선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데 광의로 해석할 경우에는 유선방송도 전기통신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사업의 경영제한

본 법안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편성, 운행, 송출에 필요한 종합유선방송국 시설을 갖추고 방송프로그램을 송출하는 종합유선방송국과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프로그램공급업 그리고 전송선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전송망사업의 3개 사업영역으로 구분하고 하나의 사업자가 2가지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상호 겸영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유선방송의 기술개발과 표준화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수용성조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겸영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경우 겸영허용 대상기관은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로 하되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종합유선방송국의 계열화, 소수독점화를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복수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보처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한하여는 종합유선방송을 복수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으로 허용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국의 경영에 대하여는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과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사, 통신사는 종합유선방송국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하고,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 그리고 특정이념 또는 사상을 지지옹호하는 정당과 종교단체도 종합유선방송국을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앞의 겸영금지 대상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도 종합유선방송국을 경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만일에 소유한 경우에도 그 소유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파산선고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형법 또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자, 보안관찰처분이나 보호처분의 집행중에 있는자,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이상의 자가 의결권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지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행하는 법인의 대표자, 이사, 감사 및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하였다.

다. 종합유선방송국 허가

종합유선방송국은 시·도지사를 거쳐 공보처장관이 허가하며 이 경우 다음사항을 심사토록 하고 있다. 즉 종합유선방송의 목적과 내용의 법령 및 국가이익의 저해여부,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능력과 기술적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등이 심사기준이 된다.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내이며 종합유선방송국의 허가에 있어서는 사업자에게 일정한 종합유선방송구역에 전담하여 운영하는 지역사업권을 부여하며 지역사업권 부여시에는 공공의 이익증진과 수신자의 편익도모, 지역간의 균형을 위하여 공보처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추가운영, 허가사항의 확실한 이행에 대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사업권을 부가에 따라 연간 방송국운영 연간 총수익의 10% 범위내에서 지역사업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업권을 부여하는 종합유선방송구역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전기통신회선설비,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 등을 참작하여 지정토록 하였다.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국은 일정기간까지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하며,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관계부서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하고,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허가시에는 법령위반 또는 허가조건 성실이행여부와 당해 지역주민 의사의 합리적 수용여부를 추가로 심사토록 하고있다.

종합유선방송국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공보처장관은 그 허가를 추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라. 프로그램공급업 허가

프로그램공급업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거쳐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시 프로그램공급업의 목적과 내용의 법령 위반 여부, 일정비율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능력 보유에 관한 사항을 심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프로그램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허가시에는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전문성과 다양성을 실현토록 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공급분야를 지정토록 하였다.

프로그램공급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여야 하며, 일정비율이상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의무가 부여된다. 프로그램공급자가 외국의 방송프로그램을 수입하거나 외국의 방송을 중계하고자 할 경우 또는 외국이 프로그램제작업자와 공동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에는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전송망사업 지정

전송망사업은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하고, 전송망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구역에 전송선로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전송망사업자가 전송선로 시설의 설치요구를 받을 때에는 일정 기한까지 이를 설치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종합유선 방송국은 전송만 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이때 전송망사업자는 시설이용료 등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종합유선방송국에 전송선로시설을 공급한다.

전송망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체신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바. 종합유선방송의 운영

유선방송 채널은 방송분야의 다양성이 구현되고,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 운영되어야 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채널을 두어야 하며, 자체제작한 지역정보 및 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할 수 있으며, 채널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그고 방송의 편성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규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으나, 심의기준에 적합하고,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외국에서 수입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종합유선방송국의 광고방송은 시간과 회수등이 방송의 편성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고, 광고방송만을 전문으로 하는 채널을 둘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 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이상 방송하여야 한다. 종합 유선방송국은 무선TV 방송국의 방송을 동시 재전송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저작권법에 의한 동시중계 방송권에 관한 규정은 배제된다.

종합유선방송국이 업무를 개시할 때에는 개국 2월전까지 역무 제공의 종류와 조건, 채널의 구성과 운영내용, 편성기준, 방송시간 및 방송프로그램, 수신 계약자의 예상인원, 사업수지견적, 사용하는 시설 및 주파수, 개국 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공보처장관에게 신고하고 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합유선방송국 또는 프로그램공급자가 외국에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국의 유선방송사업자가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방송한 내용을 방송일지를 비치하여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방송실시결과를 공보처장관과 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체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원본은 방송후 1개월간 보존해야 하고, 프로그램공급자도 공급한 프로그램의 원본을 방송후 1개월간 보존해야 한다.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시설의 분계점 등에 관한 사항은 체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구성, 운영

종합유선방송의 공공성, 윤리성 및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두고 방송관계 전문가, 변호사 등 중에서 공보처장관이 임명하는 7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임무는 종합유선방송내용의 공공성과 윤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수신자의 고충에 관한 조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규칙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방송내용의 심의에 있어서는 방송용 극영화와 만화영화(비디오물 포함), 외국의 방송프로그램(운동경기 등의 중계 및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제외), 광고 방송에 대하여는 방송되기 전에 그 방송여부를 심의 의결하고, 방송내용이 심의 기준에 위반한 때에는 경고, 해명, 사과, 정정, 당해 광고방송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중단 등 시정조치를 명한다.

방송프로그램의 심의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제정시행한다.

- 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 ②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청소년의 선도에

관한 사항

- ③ 음란, 퇴폐, 폭력을 배제하고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신장하는 사항
- ④ 국제적 우의를 저해하지 않는 사항
- ⑤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 ⑥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발에 관한 사항
- ⑦ 보도, 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
- ⑧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아. 피해에 대한 구제

종합유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자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종합유선방송국에 정정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종합유선방송국이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와 정정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무료로 방송토록 하고, 다만 피해자가 정정보도 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가지지 않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청구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정보도의 내용은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되고, 정정보도문의 자수도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정정보도의 방법으로는 그 공표가 행해진 것과 동일한 채널 및 시간대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프로그램공급자가 함께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프로그램공급자도 정정보도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정정보도의 청구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정정보도 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등은 정기간행물등록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4] 결 론

이상으로 종합유선방송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았는데 본 법안은 아직 국회에 서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는 만큼 일부내용이 수정될 여지는 있다고 하겠다. 정부안이 최종 확정 발표된 후 본 법안에 대하여는 언론에서나 관계전문가들로부터 심층적인 분석과 검토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법안의 내용중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의 3분할 운영제도에 대하여는 일부 정부부처에서도 분할운영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시한 바 있으며 특히 전송망사업을 현행 전기통신관련법의 제규정을 감안할때 본 법안에서는 따로 규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3분할된 사업의 상호 경영금지외국의 경우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으며 종합유선방송이 가장 발전된 미국의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드웨어(방송과 전송망)와 소프트웨어(프로그램)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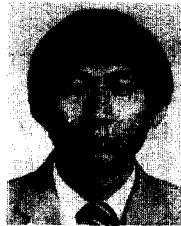
종합유선방송국 운영에 방송과 언론사 및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시키게 된데에는 우리나라의 지역특성상 CATV가 여론 형성기능을 충분히 가질수 있어 대기업 및 언론사의 참여를 허용할 경우 공중파방송과는 달리 통제가 불가능한 점과 특히 대기업의 경우 CATV를 주축으로한 국민문화생활까지 장악하게 됨으로써 나타나게 될 파급효과를 우려한 국민감정이 고려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양질의 프로그램 공급은 종합유선방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국의 예에서도 그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프로그램 제작·공급시장의 기반이 취약한 현실을 감안할때 조속히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지원책과 민간부문의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제작자의 창의성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제 종합유선방송은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단계에 있어 그 역사적인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새로운 매체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각계의 합심된 노력이 요구되는 때이다. 본 법안이 비록 공익성 유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규제가 지나친 감도 없지않으나 이는 뉴미

디어 도입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조정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는 만큼 규제하의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 종합유선방송의 발전방향은 역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쟁원리를 적극 도입하는 방향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金 楊 顯

저자약력

- 생년월일 : 1948년 12월 18일
- 1978년 3월 : 제13회 기술고등고시 합격(통신기술)
- 1982년 7월 : 서울전자교환 통제국장
- 1987년 7월 : 사업개발단 사업2부장
- 1989년 7월 : 연수원 교학국장
- 1991년 5월 : 정보통신사업본부 고도통신사업국장
전기통신 기술자